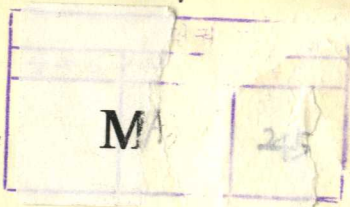


김낙경 기사



한국이성의 국제결혼과 불평등한 국적법의 개정방향

김 낙 경 (한국교회여성연합회)

708-4181-3

1. 배경

이주 또는 이민(migration)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다. 현재 지금과 같은 형태의 국제이민(international migration)은 20세기에 들어서서 정착되어졌고, 민족국가, 여권제도, 비자제도가 생긴지는 인류역사에 있어서 2-3 백년의 역사에 불과하다.

세계는 2차세계대전 이후 브레튼우드 협정(1944)으로 세계은행(IBRD)과 국제통화기금(IMF)이 탄생했으며, 샌프란시스코 협정으로 국제연합(UN)이 창설되었다. 세계 체제를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이와같은 기구들이 만들어졌다. 또한 세계경제는 1948년에서 1994년까지 가트(GATT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에서 1995년 WTO 체제로 전환되면서 자유무역의 기치를 걸고 세계시장을 하나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런 세계적인 움직임 가운데 한국사회도 1980년대 후반부터 새로운 사회현상을 겪고 있다. 과거 노동력을 내보내는 나라에서 노동력을 수입하는 나라로 외국에서 인력이 들어오고 있다. 현재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등에서 외국인이 들어와 일을 하고 있으며(산업기술연수생 68,020명, 합법취업자 13,420명, 불법체류자 129,054명 총 210,054명 1996. 12.말 통계) 그중에는 한국여성과 결혼하여 사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법무부출입국 관리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1,000명중 1명이 한국여성과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외국인력의 도입은 늘어날 추세이고,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경우 연령이 20대후반에서 30대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의 국제결혼은 계속 늘어날 추세이다. 그러나 현재의 국적법은 한국여성에게 불평등한 조항이 있고 이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2. 국제조약과 세계각국의 현황

여성의 인권보장이나 남녀평등실현에 관한 대표적인 UN조약으로는 1) 세계인권선언(1948년), 2) 기혼여성의 국적에 관한 조약(1957년), 3) 혼인의 동의, 취소연령 및 등록에 관한 규약(1962년), 4) 국제인권규약(1966년), 5) UN여성차별철폐협약(1979년)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2), 3) 의 조약에는 현재 가입하지 않고 4), 5) 의 조약에는 비준하였다. 특별히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는 1984년 12월 유엔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하였으며, 1985년 1월7일 조약 제 855호로 공포 됨으로써

1985년 1월26일부터 동협약은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비준 당시 상치되는 가족법과 국적법을 유보한채 비준하였다. 그후 가족법은 완전하지는 않으나 1990년 개정되었으나 국적법은 48년제정된 이래 개정된적이 없다.

구체적으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 보면 제2부 9조에 " 1. 당사국은 여성이 국적을 취득, 변경 또는 보유함에 있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특히 외국인과의 결혼 또는 혼인중에 부에 의한 국적의 변경으로 처의 국적이 자동적으로 변경되거나, 처가 무국적으로 되거나 또는 부의 국적이 처에게 강제되지 아니 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자녀의 국적에 관하여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여성에게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국적취득과 관련하여서 혼인, 출생, 귀화, 국적회복등이 있다. 그런데 부부가 혼인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하는 원칙으로는 부부국적동일주의와 부부국적독립주의가 있다. 그리고 자녀가 국적을 취득하는 원칙으로는 출생지주의와 혈통주의가 있다. 출생지주의란 어떤나라의 영토내에서 출생한 자에게는 그 부모의 국적여하에 관계없이 그 나라의 국적이 부여되는 원칙이다. 반면 혈통주의는 출생지는 불문하고 부모의 국적을 기준으로 자녀의 국적을 정하는 원칙이다. 여기에는 아버지의 국적을 따르는 부계우선 혈통주의와 부모중 어느 일방의 국적을 따르는 부모양계혈통주의가 있다. 세계적으로 1970년대 이후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한 나라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한 나라는 일본, 중국, 북한, 필리핀, 미얀마, 터키, 소련, 폴란드, 독일,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등이며 부계혈통우선주의 나라는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이다. 캐나다, 미국,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호주, 뉴질랜드등은 출생지주의 국가이다.

일본만 하더라도 부계혈통주의에서 1984년에 국적법을 개정하여 부모양계주의를 채택했으며, 배우자의 귀화요건에서도 평등화를 이루었다.

3. 한국 국적법의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들

한국의 국적법으로는 결혼 당사자인 외국인 남자는 결혼과 동시에 그의 의사대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또한 현행의 국적법으로는 남편의 국적취득, 변경으로 처의 국적은 자동적으로 취득, 변경,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귀화에 있어서 똑같은 배우자인 외국인에 대하여 그 배우자가 남성인가 여성인가에 따라 달리 취급함으로써 성차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녀의 경우에도 부계우선혈통주의를 채택함으로써 한국인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대한민

국적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이들에게 대다수가 한국국적을 취득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미 사실혼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취학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자녀를 둔 가정도 있다. 이들의 어려움은 원칙적으로 호적변상 출생신고가 접수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외할아버지의 호적에 올린다든지 사생아로 어머니 호적에 올리거나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의료보험이나 초등학교의 입학도 할 수가 없다. 외국인 남편 또한 자신의 나라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여도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동거인 비자(F1)를 받게 된다. 이 동거인 비자의 유효기간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년이다. (출입국관리시행령 95.12.1자로 개정) F1비자는 취업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동거하는 가족의 방문과 체류만을 허가하는 비자이다. 취업하면 불법체류자가 되고 발각되면 추방 당하여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 이들 중에는 이런 엄격한 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제3국에서 재외공관의 입국절차를 반복하는게 실제 행해지고 있다. 즉 홍콩이나 다른 나라에 3개월마다 한번씩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이다. 이에따른 경제적 부담은 엄청난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결혼사실을 숨기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서 고용허가제가 실시되고 합법적으로 일용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외국인이 늘어날 경우 국제결혼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자녀교육의 문제나 다른문화와의 접촉에서 발생하는 가정의 문제와 국제적인 관계의 문제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예를들면 원두문화에서는 일부다처제가 허용되는 나라가 있다. 이런 나라에서 온 외국인의 경우 본국에 부인이 있고 여기서도 결혼을 원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사회복지차원에서 검토와 대안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4. 국적법개정을 위한 사회단체의 움직임들

여성단체에서는 가족법과 더불어서 국적법이 남녀평등원칙에서 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지금까지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했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에서는 가족법개정활동도 함께 하였으며, 1996년 개소한 외국인 여성노동자 상담소 활동을 통해서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여성의 케이스를 접하게 되었고 한국의 국적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대책협의회에서도 1996년 동북아시아 여성포럼에서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한국의 국적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고, 한국의 불평등한 국적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를 한 바도 있다. 이에 한국교회여성연합회에서는 1997년 5월에 외국인 여성노동자문제에 대한 심포지

움을 하면서 한국의 국적법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인 검토를 하였고, 이어서 국적법 개정을 위한 사업에 착수하였다. 이 사업의 하나로 국적확인 소송을 하였고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이다. 한편 국제 결혼을 한 커플들의 모임을 만들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이들을 위한 사업을 해 나 갈 것이다.

5. 결 론

세계적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한국도 이런 시대적인 조류에 따라 많은 부분들을 개방해야 하는 시점에 있으며, 국제적으로 지켜야 하는 많은 조약들에 대해서도 유연하고 성숙한 자세로 대처 할 것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국내법들도 이런 시각에서 많은 부분 검토의 소지가 있다. 이에 하나가 국적법의 문제이다. 남녀평등의 원칙과 시대적인 조류에 합치되는 법안으로 개정되기를 바란다.

지난 8월 14일자 법률신문에 국적법 개정시안이 발표되었다. 우리의 요구가 많은 부분 반영이 되었다.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이 법이 개정되기를 바란다.

(참고자료)

강수돌((1997), 경영과 노동 한울아카데미

설동훈 (1996), “한국사회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1), 개정가족법과 가족법개정운동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3), 각국의 공적 부문에 있어서의 여성차별철폐조치에 관한 연구

한국교회여성연합회 (1997), 외국인 여성노동자 무엇이 문제인가?

이태영(1992), 가족법 개정운동37년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출판부

김경득 “일본국적법 및 기류법개정과 재일한국인(상,하)

“일본 국적관계법”

“일본국적법 개관”

법률신문(1997. 8) “국적법개정시안”